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0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홍국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 및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표지 및 펫파킹 설치를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의6호 신설)
- 나. 시장이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 법 제49조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 등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반려동물 안내표지를 공원에 설치하게 함.(안 제22조의2의제1항 신설)
- 다. 시장이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물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의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반려동물 안내표지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원에서의 반려동물 안전 사고 예방과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 등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반려동물 안내표지를 공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원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한다.</u></p> <p><u>제22조의2(반려동물 안내표지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원에서</u>의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 등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반려동물 안내표지를 공원에 설치하여야 한다.</p> <p><u>②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원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